

춘천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0가합87 판결 [부당이득금 등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8,300만 원, (2) 피고 C는 2,400만 원, (3) 피고 D은 1,350만 원, (4) 피고 B, C는 공동하여 4,500만 원, (5) 피고 B, D은 공동하여 2,800만 원 및 위 (1) 내지 (5)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들과 부동산 중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원고 주장 중개수수료 지급 내역'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중개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그 중 (a) 피고 B은 5,100만 원, (b) 피고 C는 900만 원, (c) 피고 D은 1,250만 원, (d) 피고 B, D은 공동하여 2,800만 원, (e) 피고 B, C는 공동하여 4,500만 원 및 위 (a) 내지 (e)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원고 주장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은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제3자에게 이미 원고 주장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판단

설령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들과 부동산 중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원고 주장 중개수수료 지급 내역'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주장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이거나, 을가 제3, 4, 5호증, 을나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경 E 외 12인에게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원고 주장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E 외 12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각 채권액의 비율로 위 2억 4,000만 원을

안분하여 각각의 금액만큼(각 채권액의 약 70% 상당임)을 양도해주는 계약이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E 외 12인에게 원고 주장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귀속주체는 E 외 12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① 피고 B에게 2013. 1. 25. 1,000만 원, 2013. 2. 7. 200만 원, 2013. 7. 31. 2,000만 원, 2014. 9. 22. 9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에서 3,200만 원만을 청구하였다), ② 피고 C에게 2013. 7. 29. 300만 원, 2013. 8. 24. 100만 원, 2013. 9. 4. 1,000만 원, 2014. 1. 9. 1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③ 피고 D에게 2013. 8. 2. 1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은 변호사인 원고로부터 사건 업무처리 관련 수고비, 여비 등으로 일부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4, 갑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수기로 작성된 메모에 불과하고, 증인 F의 증언 및 갑 제42호증의 기재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원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각각 믿기 어렵다.

한편 갑 제41, 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부상준, 판사 지예현, 판사 배성준